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 5. 10., 타법개정]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 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7. "디지털 장치"라 함은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제3조의2(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대상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적용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류위원회는 기술·법률·행정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방송통신기자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④ 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 적용기준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
  2. 개별 적용기준
    - 가.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 다. 전자파인체보호분야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2장 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기능(성능) 등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 ③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최초의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파수허용편차
- 나.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
- 다. 스푸리어스발사강도
- 라. 점유주파수대역폭
- 마.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 바.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2. <삭 제>

⑧ 제7항의 단서에 따른 회로도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성적서의 제출은 제16조제1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5조의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적정성
- 2.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3. 인증번호
-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 5. 인증연월일

### 제3장 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3.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너목 2)와 3)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등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등록연월일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9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자기 시험성적서(제3조제3호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 [1]부터 32)까지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별표 1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비치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6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원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잠정인증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 다.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

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유효기간
6. 기타 허용 조건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관련 공무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4.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 바. 별표 1 제11호 너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 2.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삭 제>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6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차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 중에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4.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 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어린이용 장난감)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6.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

## 제7장 조사 및 조치

**제21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1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시험 방법 등)** ① 원장은 영 제117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원장에게 사후관리 결과(적합성평가기준 부적합에 한함)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자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시료구매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전자파적합성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유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경우에는 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제품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①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 원장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나.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마.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바. 제28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변경신고

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

4. 30일 이내 처리 :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대리인의 지정)**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0조에 따른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신청
6.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7.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제28조(수입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0호,2022.5.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GHz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별표 1]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선박국용	○	○					○			SA	
	2) 해안국용	○	○					○			SB	
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 MF전용수신기	○	○					○			MR	
	2) MF·HF전용수신기	○	○					○			HR	
	3) VHF전용수신기	○	○					○			VR	
다.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SN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MF·HF송수신장치	○	○					○			SH	
	2) VHF송수신장치	○	○					○			SV	
마.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	○					○			SRRT	
	2)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					○			SRAIS	
바. 네비텍스수신기		○	○					○			NR	
사.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			SD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미 부착형	○	○					○			SE	
	3) 개인위치지시용 무선 표지설비	○	○					○			PLB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VA1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VA2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VA3	
카. 단축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	
타. 경보자동전화장치		○	○					○			T	
파.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			WA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B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C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하.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 직경 32cm이상	○	○				○			RAL	
		나) 표시면의 유효 직경 25cm이상 32cm미만	○	○				○			RAM	
		다) 표시면의 유효 직경 18cm이상 25cm미만	○	○				○			RAS	
	2) 국내 항해용	○	○				○			RC		
	3) 국내 소형선박용	○	○				○			RD		
거. 무선방위 측정기	1) 의무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	
		나) 중 단 파무 선 방위 측정기	○	○				○			D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	
	2) 임의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A	
		나) 중 단 파무 선 방위 측정기	○	○				○			DB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A	
너. 라디오부이의 기기				○				○			B	
더.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식별장치	○	○					○			AIS1	
	2)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	○					○			AIS2	
	3)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	○					○			AIS3	
러.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1) 해안국용	○	○					○			DHF1	
	2) 선박국용	○	○					○			DHF2	
머. 자율해상 무선 기기	종별 A	○	○					○			AMRD1	
	종별 B	○	○					○			AMRD2	

##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A	

※ 비고

-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적 규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항공인증(TSO 등) 또는 전파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및 회로도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규정은 별도 고시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			SRG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SRA	
나.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RLS	
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1	
라. 단축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S	
마.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			P1	
	2) 라디오로봇 기기		○				○			P2	
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CA1	
사.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1	
	2) 해상용	○	○		○		○			CCCA2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 송·수신기기	○	○				○			CCCA	
아.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PMSE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2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3	
카.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IPN1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4) 기 타	○	○				○			IPN9	
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MOB	
파.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ITS1	
	2)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ITS2	10mW/MHz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소출력 무선 기기에 해당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하.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FVG5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52	
	3) 기 타	○	○				○			FVG53	
거.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 GHz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FVG6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62	
	3) 기 타	○	○				○			FVG63	
<p>※ 비 고</p> <p>○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p>											

###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MCA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MCA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A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5) 기타	○	○				○			MCA9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PCS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PCS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PCS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5) 기타	○	○				○			PCS9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M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M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M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5) 기타	○	○				○			IMT9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LTE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LTE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TE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LTE4	
	5) 기타	○	○				○			LTE9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O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O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O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OT4	
	5) 기타	○	○				○			IOT9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번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1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12	
	3) 기 타	○	○				○			FVG13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2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22	
	3) 기 타	○	○				○			FVG23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ERT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A2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GMPCS	
카.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DATA	
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3	
	2) 해상용	○	○		○		○			CCCA4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CCCA5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P	
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WIBRO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BS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GHz 주파수 대역	○	○				○			WLL1	
	2) 26GHz 주파수 대역	○	○				○			WLL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더.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FVG3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32	
	3) 기 타	○	○				○		FVG33	
러.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 GHz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FVG4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42	
	3) 기 타	○	○				○		FVG43	
※ 비 고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가) 5150~5350MHz, 5470~5850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	
		나) 5925~6425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A	
		다) 5925~6425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D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 5925~7125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B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마) 17700~17740MHz, 19260~19300MHz 주파수 대역	○	○					○	LARN5C		
	6) 중계용 무선기기	○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	○					○	RDR			
12)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	○					○	ITSS3	10mW/MHz 이하의 기기만 해당		
13) 재난정보방송용 무선기기	○	○					○	CWB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MHz 주파수 대역	○	○		○			○	RFID1		
	2) 433MHz 주파수 대역	○	○					○	RFID2		
	3) 13.56MHz 주파수 대역	○	○					○	RFID3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MHz ~ 923.5MHz 주파수 대역	○	○				○		USN1	
	2) 940.1MHz ~ 946.3MHz 주파수 대역	○	○				○		USN2	
	3) 1.7GHz 주파수 대역	○	○				○		USN3	
	4) 940.1MHz ~ 944.3MHz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4	
	5) 925MHz ~ 931MHz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5	
사. 로드없는 전화기	1) 1.7GHz 주파수 대역	○	○	○	○		○		DCP17	
	2) 2.4GHz 주파수 대역	○	○	○	○		○		DCP24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MHz ~ 264MHz 주파수 대역	○	○				○		FACS2	
	2) 22GHz ~ 23.6GHz 주파수 대역	○	○				○		FACS3	
	3) 57GHz ~ 66GHz 주파수 대역	○	○				○		FACS1	
	4) 123GHz ~ 123GHz 주파수 대역	○	○				○		FACS4	
	5) 244GHz ~ 246GHz 주파수 대역	○	○				○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MICS4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1) 5.8GHz 주파수 대역	○	○				○		SRD5	
	2) 10GHz 주파수 대역	○	○				○		SRD10	
	3) 24GHz 주파수 대역	○	○				○		SRD24	
	4) 70GHz 주파수 대역	○	○				○		SRD70	
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	○				○		TVWS1	
	2) 이동형 기기	○	○				○		TVWS2	
파. 레벨측정 레이더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TLPR	
	2) 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더	○	○				○		LPR	

※ 비 고

1.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6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3.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5. 라목 5)의 5925~6425MHz, 5925~7125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H	
나.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DHF대 기기	○	○				○			HAM1	
	2) VHF/UHF대 기기 등	○	○				○			HAM2	

###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시스템류	1) 교환시스템 (전화, 데이터, PBX, ATM, 키폰 등)	○		○				○		B11	
	2) 자동음성처리 및 전자사서함시스템	○		○				○		B41	
	3)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B43	
	4)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		○					○	LOW2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B99	
나. 회선종단 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2)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	○		○				○		C21	
	3) 원거리(WAN) 전송장치 (64kbps이하 · 2,048kbps · 44,736kbps 회선에 접속 되는 장치)	○		○				○		C31	
	4) PCM단국장치	○		○				○		C4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1,544kbps · 155,520kbps 인터페이스 등)	○		○				○		C99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A84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A44	
4) 전화기류 (전화기, 회의용 브릿지, 회선 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 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		○				○		A11	
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 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 기기 (휴오트메이선, 비디오어폰 등)	○		○				○		A17	
7)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A20	
8) 모뎀	○		○				○		A21	
9) 팩시밀리 모뎀	○		○				○		A23	
10)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A24	
11)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A32	
1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A33	
1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A34	
14)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		A42	
15) 원격제어기기	○		○				○		A45	
16)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 기기	○		○				○		A51	
17)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A52	

다. 단말기기류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18)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GDSL 모델 등)	○		○				○		A81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업자망에 접속하는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		○				○		A82	
20) 광동축 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	○		○				○		A86	
21) 공중전화기	○		○					○	A18	
22) ISDN 망종단기기(NTE)	○		○					○	A61	
2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 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A63	
25) 접속 커넥터			○					○	LOW11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IP카메라, 폐쇄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화기 등)	○		○				○		A90	
27)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2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A99	

###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		○				○		D11	
	2) 주파수변조기	○		○				○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제전송용 변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D6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		A85	

###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		A83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증폭기	○		○				○		D21	
나. 레벨조정기	○		○				○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		D33	
라. 광 증폭기	○		○				○		D34	
마. 신호처리기	○		○				○		D32	
바. 분기기			○					○	LOW12	
사. 분배기			○					○	LOW13	
아. 동축케이블			○					○	LOW14	
자. 보호기			○					○	LOW15	
차. 가입자보호기(CATV)			○					○	LOW16	
카. 광분배기			○					○	LOW17	
타. 광케이블			○					○	LOW18	
파. 직렬단자			○					○	LOW19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		D99	

###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b>가.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b>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 제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이용설비는 제외)	1)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11	
	2)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21	
	3)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31	
	4)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41	
	5) 삭제										
<b>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b>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용자 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 기기류	○						○		MOB11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전장품)	○						○		MOB31	
	3) 전자식 운행기록계	○						○		LIM11	
<b>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b>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 뜰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 마사지기, 전기 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 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 청소기)	○						○		CLN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전조다리미, 스팀 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짜기, 다리질프레스)	○						○		IRN11	
	3)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						○		DSM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4)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기호브, 전기콘로, 전기가열기, 전기 토스터, 전기 프라이팬, 전기고기 구이, 와플기, 핫플레이트)	○					○		○	MWV0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제품에만 적용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5)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WSM11	세탁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과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6)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전기 머리인두, 모발말개)	○							○	HDR11		
7) 전기보온기 및 전기 온장고, 전기주온기	○							○	WRM11		
8)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랩거름기, 재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칼이, 전기장롱 따개, 전기칼, 커피 분쇄기, 빙삭기, 전기 고기갈개, 전기국수 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	KTC11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9)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 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 조리기, 우유가열기, 찜방가열기, 요쿠르트 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전기액체 가열기기)	○				○			○	CUK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제품에만 적용	
1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요 포함)	○				○			○	MAT11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 제품은 제외	
11) 전기찜질기	○							○	STW11		
12) 발 보온기 및 전기 손난로	○							○	WRM21		
13)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및 전기 순간온수기	○							○	POT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14) 전기냉장·냉동 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전기냉수기 포함)	○						○		COL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15) 전자레인지 (300MHz ~ 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		RAM11	
16) 가정용 전동제빙기	○						○		SEM11	
17) 전기충전기	○						○		CHG11	출력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18) 전기전조기 (회전형 전기전조기, 손전조기 포함)	○						○		HRY11	
19)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	○						○		STV11	
20) 전기맛사지기	○						○		MSG11	
21)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에 한함)	○						○		SCD11	
22)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포함)  ※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PUM11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 이외의 기기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23) 전기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및 사우나용 전열기 포함)	○						○		SUN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24) 전기욕조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 포함)	○							○		BTH11	
25) 공기청정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AIR11	정격 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적합등록 대상
26) 자동판매기	○							○		MHN11	
27)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FAN11	정격 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적합등록 대상
28)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BTH21	
29) 가습기	○							○		MST11	
30)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		DIS11	
31) 전기용해기 (왁스용해기, 초코렛 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		MHN21	
32) 이미용기 (전기 머리 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 모발가습기, 손톱 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어발기, 안면 사우나기)	○							○		PET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33)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						○		SKT11	
3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CHR11	
35) 전기온수메트 (전기보일러, 전기 온수침대 포함)	○						○		BOL11	
36) 구강청결제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		BRH11	
37) 해충퇴치기 및 전기포충기	○						○		VRM11	
38) 전기집진기	○						○		DUS11	
39) 착유기	○						○		MIL11	
40)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						○		SEV11	
41) 전기에어커피	○						○		CTN11	
42) 팬 코일 유닛(Fan coil unit)	○						○		FAN21	
4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44)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닥트판 농구게임기 및 기타 게임기기)	○						○		GAM11	
45) 전동형 롤스크린	○						○		CTN21	
46)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		VRM21	
47) 보플제기	○						○		CLE11	
48) 산소이온발생기	○						○			
49)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포함)	○						○		COW11	
50)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포함)	○						○			
51) 전동공구	○						○		ETL11	정격 입력이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전기드릴, 전기드릴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서, 전기샌더, 전기톱, 전기행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잔디깎기, 전기못총, 트리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1.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적합등록 대상
5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1	
53) 전기가열기기 (남뱀인두, 남뱀제거인두, 권총형남뱀기, 열가소성도판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 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							○	WDM11	
54)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							○	AQU11	
55) 기포발생기기	○							○	BBL11	
56)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BLD11	
57) 전기분무기	○							○	MST11	
58) 전기소독기	○							○		
59)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ROL11	
60) 과일껍질깎기	○							○	KCN11	
61) 감자탈피기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62) 전기정미기	○							○		
63) 전기빵자르개	○							○		
64) 애완동물 목욕기	○							○	POL11	
65) 전기주류속성기	○							○	ELD11	
66) 전기시계	○							○	WAT21	
67) 컵프레서	○							○	COM11	
68) 전기분수기	○							○	WTP11	
69)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PJT11	
70) 수도동결방지	○							○	WTR11	
71)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BIN11	
72) 전기작동 도어록	○							○	DOR11	
73) 삭제										
74) 삭제										
75) 전기장난감	○							○	TOY11	
76) 전기헬스기구	○							○	HEA11	
<b>라. 조명기기류</b> : 9kHz부터 400GHz 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 기기, 백열등기구, 전기 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 방전등기구, 투광조명 기구)	○						○	LIT11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	IVT11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3)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	LIG11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							○	LIT21
<b>마. 전기철도기기류</b>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	○							○	TRA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 전원시설)										
<b>마. 전력선통신기기류</b>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 응용설비는 대상에서 제외	○						○		LIN	
<b>사. 부정전 전원장치</b>	○						○		IM011	정격용량이 10kVA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 등록 대상
<b>아.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b>	1)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타이머·타이머스위치 포함)	○						○	SWT11	
	2) 전자개폐기									
	3) 전자식 온도조절기									
	4)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b>자. 멀티미디어 기기류</b>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 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1) 텔레비전수상기	○					○	VD011		
	2) 영상모니터	○					○			
	3)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			
	4) 비디오카메라	○					○			
	5) 튜너	○					○			
	6) 편집기	○					○			
	7) 디스크플레이어	○					○			
	8) 라디오수신기	○					○	RAD11		
	9) 앰프 (앰프내장형 스피커 포함)	○						○	AMP11	
	10) 리시버	○						○	AUD11	
	11) 음성기록계	○						○	AUD11	
	12) 음성플레이어	○					○			
	13) 오디오시스템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14) 전자악기	○						○			
15) 위성방송수신기	○						○		STB11	
16) 비디오게임기구	○						○		VDO21	
17) 비디오폰	○						○			
18) TV영상프로젝터	○						○			
19) 음질조절기 (이퀄라이저 포함)	○						○		AUD21	
20) 오디오프로세서	○						○			
21) 신호변환장치(AD/DA)	○						○			
22) 음성 및 영상분배기	○						○			
23) 컴프레서 게이트	○						○			
24) 전자시계	○						○		WAT11	
25) CCTV 카메라	○						○		VDO31	
26) 영상전송기	○						○			
27)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28) 영상기록계	○						○			
29) A/V 신호수신기	○						○			
30) 영상프로세서	○						○			
3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32) 턴테이블	○						○			
33) 컴퓨터류	○						○		IMC11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						○		IMA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콘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		IMI	
36) 기타 정보기기류	○						○		IMI61	
37) 사무기기류 (코팅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아확살습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제단기, 제본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충전기, 번호표발행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	○						○		IMO	
38)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MEA22	
39) 측정·검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속 설비 등의 기자재류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MEA11	
40)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						○		IMDD	
41) 삭제										
<b>차. 승강기</b>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11	
2)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21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						○		ELV31	
4)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		ELV41	
<b>카. 소방용품 기기류</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1) 누전경보기(수신부)	○						○		FIR1	
2) 가스누설경보기	○						○		FIR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에 한함)	3) 수신기	○						○		FIR3		
	4) 중계기	○						○		FIR4		
	5) 감지기	○						○		FIR5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		FIR6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FIR7		
	8) 가스분말식 자동 소화장치	○						○		FIR8		
	9)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장치	○						○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FIR10		
	11) 상업용주방자동 소화장치	○						○		FIR11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탭퍼	○						○		FIR12		
	13) 자동폐쇄장치	○						○		FIR13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 물러설비	○						○		FIR14		
	15) 플랩탭퍼	○						○		FIR15		
	16) 유도등	○						○		FIR16		
	17) 비상조명등	○						○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						○		FIR18		
	<b>타. 전기자전거류</b>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로 분류)	○							○		BIC	
	<b>파.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b> (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	○							○		PWR11	
<b>하. 기타 기기류</b>	○							○		IND		
	1) 가목, 다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파목의 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제어)으로 사용되는 기기류											
	2)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장치)	○							○	LIM21		
	3) 절연변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 변압기, 교류어댑터)	○							○	AVR11		
	4) 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	HVT11		
	5) 전기용품 보호용 부속기기(케이블릴, 누전차단기)	○							○	CBL11		
	6)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	○							○	SEC11		
	7) 전기용접기류 (아크용접기, 총형아크 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							○	IMV11		
<b>기. 삭제</b>												
<b>너. 그 밖에 특수조건 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b>	1) 다목, 라목, 자목 1)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	○							○	REC		
	2) 가목, 다목, 사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4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							○	○	REC1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을 적용
	3) 가목, 다목, 사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2m를 초과하며 무게가 250kg을 초과하는 용복합 멀티미디어 기기류	○							○	○	REC2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을 적용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							○		REC3	
<b>더.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b>	○								○	UBD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p>※ 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li> <li>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li> <li>3.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li> <li>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li> <li>다. 카메라 렌즈</li> <li>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li> </ul> </li> <li>4.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li> <li>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li> <li>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li> <li>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가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li> <li>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li> </ul> </li> <li>5. 더목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조명기기류’ 를 적용한다.</li> <li>6.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li> <li>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li> <li>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li> <li>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li> </ul> </li> <li>7.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li> <li>8. 하목 7)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에서 제외한다.</li> <li>9. 더목 2) 또는 3)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식별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li> </ol>										